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6)

서 영 호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1.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어음만기일 유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인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받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의 지급기간이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및 시공(施工)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한 자를 말하며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적용기준〉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 이번 호에는 지난 호(제58호, 2000. 6. 28 발간)에 게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및 「현금비를 유지」에 이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어음만기일 유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게재하며, 「유권해석」 및 「심결례」는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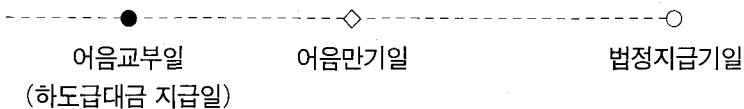
- ②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어음발행인이 발주자가 아닌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받은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
-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만기일 유지는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을 유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어음할인료

가. 어음할인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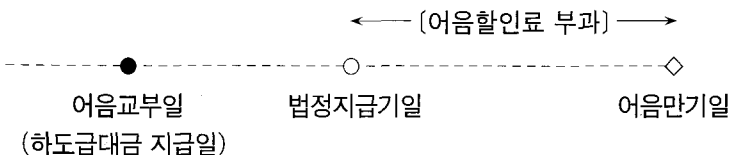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를 법정지급기일이라 함) 이내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내인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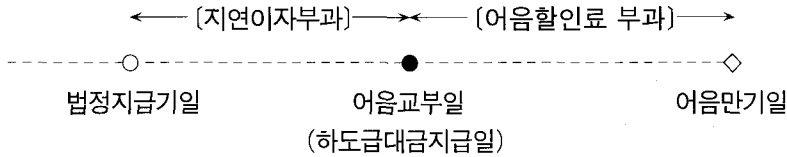
- ②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지급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



대금지급일 이후인 경우 법정지급기일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지급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어음할인율을 고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어음할인율〉

- 1998. 5. 11 이전에 교부된 어음 : 연 12.5%
- 1998. 5. 12부터 1998.12.31까지 교부된 어음
 - 어음결제기간(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연 17.0%
 - 어음결제기간(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9.0%
- 1999.1.1부터 2000.5.11까지 교부된 어음 : 연 12.5%
- 2000.5.12 이후에 교부된 어음 : 연 9.0%

⑤ 어음할인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음교부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은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어음할인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아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5일을 법정지급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기(1)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지급기일을 법정지급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기 (1)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할인가능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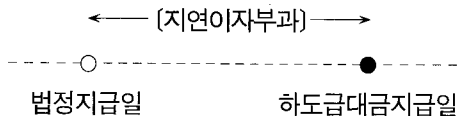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 ①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②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③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 ⑥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리업무 취급기관

3. 지연이자

원사업자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를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이를 지연이자라 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뿐만 아니라 선급금의 지연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및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의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선급금의 지연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및 관세환급액의 지연지급에 대



한 지연이자 지급은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지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지연이자율〉

- 하도급대금지급일이 1997. 3. 31 이전인 경우 : 연 25%
- 하도급대금지급일이 1997. 4. 1부터 1998. 1. 12까지인 경우 : 연 18%
- 하도급대금지급일이 1998. 1. 13 이후인 경우 : 연 25% **공정**

토막상식

문방구어음(개인어음)

문방구어음(개인어음)도 어음금 미지급시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정지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은행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법적 성격과 효력을 갖고 있다.

문방구어음도 어음이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취인,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공란인 채로 발행될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취급된다.

다만 문방구어음은 하도급법이 적용하고 있는 할인가능어음이 아니므로 문방구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문방구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거래 강제 행위

